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3조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가목	전용주거지역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가목(1)	제1종전용주거지역
1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가목(2)	제2종전용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나목	일반주거지역
2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나목(1)	제1종일반주거지역
2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나목(2)	제2종일반주거지역
2의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나목(3)	제3종일반주거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다목	준주거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호가목	중심상업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호나목	일반상업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호다목	근린상업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호라목	유통상업지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가목	전용공업지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나목	일반공업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다목	준공업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목	보전녹지지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나목	생산녹지지역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다목	자연녹지지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1호가목	자연경관지구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1호나목	시가지경관지구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1호다목	특화경관지구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	시가지방재지구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	자연방재지구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나목	중요시설물보호지구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다목	생태계보호지구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	자연취락지구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집단취락지구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8호가목	주거개발진흥지구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8호나목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8호라목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8호마목	복합개발진흥지구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8호바목	특정개발진흥지구
2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
30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 제한지역
31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장설립 승인지역
3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전용주거구역
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주거구역
3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준주거구역